

工業所有權法중 實用新案法改正案

—PCT加入, 不實權利防止등 위해—

- ◎.....特許廳은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趨勢에 따라 特許協力條約(PCT).....◎
- ◎.....에 加入하는 것을 前提로 特許出願節次의 國際協力 및 技術情報의 擴散.....◎
- ◎.....을 통한 國內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國內的措置로써 實用.....◎
- ◎.....新案法中 改正法律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또한 不實特許權의 行使로부터 善意의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特許.....◎
- ◎.....權効力의 一時停止에 관한 規定도 改正法案에 新設하고 있다.◎

改正案 主要骨子

가.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에 관한 規定 第4章의 2를 新設함.

나. 外國인이 우리나라에서 實用新案登錄을 받고자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

1) 外國인이 自國에 出願한 날을 우리나라에 出願한 날로 認定함(案 第29條의 2).

2) 出願인이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 그 立證書類 提出期間은 國內出願에 있어서는 出願日로부터 1年3月이나 國際出願에 있어서는 PCT에 의거 1年9月로 함(案 第29條의 10 特許법 准용).

3) 國際出願書는 外國語로 作成되므로 出願人은 出願後 1年8月以內에 翻譯文을 提出토록하고 그 期間內에 翻譯文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取下된 것으로 봄(案 第29條의 3).

4) 國內出願의 公開時期는 出願日로부터 1年 6月이나 國際出願의 國內公開時期는 出願書 翻譯文의 提出時期에 맞추어 1年8月로 함(案 第29條의 10 特許법 准용).

5) 出願變更 및 審査請求 등은 出願書의 翻譯文을 提出하고 手數料을 納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案 第29條의 6.7).

6) 國際出願을 翻譯文에 의하여 審査하므로 出願書와 그 翻譯文이 一致하지 않는 部分이 있을 때에는 一致되는 部分에 限하여 實用新案登錄을 하도록 함(案 第29條의 8.9).

다. 不實 實用新案權의 行使로부터 善良한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實用新案登錄 無效審判 請求時 그 實用新案登錄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는 그 實用新案權의 效力을 一時 停止시킬 수 있는 根據規定을 新設함(案 第25條의 2).

라. 審査官도 利害關係인과 같이 無效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도록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制限規定을 削除함(案 第25條 第2項).

四. 其他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나. 豫備措置

다. 會議

라. 其他

法律第 號

實用新案法中 改正法律(案)

實用新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 2를 同條 第1項으로 하고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第29條의 3 第1項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157條의 10 第1項의 國際特許出願(第29條의 11 第6項 또는 特許法 第157條의 21 第6項의 規定에 依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包含한다)인 경우에 있어서는 第1項의 適用에 關하여는 第1項中 “出願書에 最初에 添附한 明細書 또는 圖面に 記載된 考案 또는 發明”은 “國際出願日에 提出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본다.

第25條第2項中 但書를 削除하고 第25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條의 2(審判請求와 實用新案權의 效力의 一時停止) ① 審査官은 第25條第1項第1號의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 審判請求의 對象이 된 實用新案登錄權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는 그 實用新案權의 效力의 一時停止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特許法 第97條의 2 第2項 내지 第4項은 本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章의 2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關한 特例(第29條의 2 내지 第29條의 11)”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章의 2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關한 特例 第29條의 2(國際出願에 依한 實用新案登錄出願) 特許協力條約에 依하여 國際出願日이 認定된 國際出願으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爲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指定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第29條의 3(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翻譯文) ① 第29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以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의 優先日(以下 “優先日”이라 한다)로부터 1年 8月以內에 國際出願日에 提出한 出願書, 明細書, 請求의 範圍 및 圖面の 國語에 依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해야 한다.

② 第11項에 規定한 期間內에 第1項에 規定한 出願書, 明細書 및 請求의 範圍의 翻譯文의 提

出이 없는 때에는 그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은 取次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翻譯文을 提出한 出願人은 第1項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그 翻譯文에 加하여 새로운 翻譯文을 提出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に 記載된 事項으로서 優先日로부터 1年 8月(그 期間內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以下 “基準日”이라 한다) 以內에 提出된 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한 翻譯文(以下 “出願翻譯文”이라 한다)에 記載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實用新案登錄 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に 記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翻譯文은 第8條第1項 및 第2項에 依하여 提出된 實用新案登錄出願書 및 그 添附書類로 본다.

第29條의 4(書面の 提出) ①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第29條의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翻譯文의 提出과 同時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 및 住所나 營業所(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3. 提出年月日
4. 考案의 名稱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號

② 特許廳長은 國際實用新案登錄 出願의 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하여야 할 書面을 第1項에 規定한 時期에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期間을 定하여 그 書面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書面의 提出을 命받은 者가 第2項에 依하여 指定한 期間內에 그 書面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當該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第29條의 5(圖面の 提出) ① 國際實用新案登

錄出願의 出願人은 國際出願日에 提出한 國際出願이 圖面을 包含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基準日까지 圖面(圖面에 關한 簡單한 說明을 包含한다)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基準日까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の 提出이 없는 때에는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人에게 期間을 定하여 圖面の 提出을 命할 수 있다. 基準日까지 第29條의 3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の 翻譯文의 提出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圖面の 提出을 命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한 期間內에 그 提出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當該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한 圖面은 第29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補正으로 본다. 다만 第29條에서 準用하는 同法 第10條의 2 第2項의 補正 期限은 圖面の 提出에 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9條의 6(出願變更의 時期制限) 特許法 第157條의 9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關하여는 同法 第157條의 11 第1項 및 同法 第157條의 1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同法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를 納付한 後 同法 第157條의 21 第6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關하여는 同項에 規定한 後가 아니면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變更出願할 수 없다.

第29條의 7(出願審査請求의 時期制限)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第29條의 3 第1項 및 第29條의 4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를 納付한 後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아닌者는 優先日로부터 1年 8月을 經過한 後가 아니면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國際實用新案登錄 出願에 關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없다.

第29條의 8(拒絕査定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拒絕査定에 關하여는 第24條의 2 第1項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는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 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考案 以外の 考案에 關하여 된 때(그것을 理由로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이 있는 境遇에 限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로 한다.

第29條의 9(實用新案登錄의 無效事由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無效事由에 關하여는 第19條第1項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는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考案 以外の 考案에 關하여 된 境遇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로 한다.

第29條의 10(準用規定) 特許法中 第157條의 10, 第157條의 13 乃至 第157條의 15 및 第157條의 18의 規定은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9條의 11(決定에 依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①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爲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指定한 國際出願이 特許協力條約 第25條(1)에 規定한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商工部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特許廳長에게 同條(2)(a)에 規定한 決定을 하여 줄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한 者는 그 申請과 同時에 出願書, 明細書 請求의 範圍 圖面 및 其他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國際出願에 關한 書類의 國語에 依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條1項의 申請을 한 者 또는 하고자하는 者는 特許協力條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에 當該出願書類의 寫本을 大韓民國에 送付하여 줄것을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請求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은 條1項의 申請을 한 者가 第3項에 規定한 期間內에 第3項의 請求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1項의 申請을 決定으로 却下할 수 있다.

⑤ 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關聯되는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서 正當하게 된 것인지에 關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⑥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廳長이 第5項의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

規則의 規定에 따라서 正當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關聯되는 國際 出願은 그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이 없었던 경우에 國際出願日로 認定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⑦ 第1項의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을 받은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第6項에 規定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國際出願에 關하여 第1項에 規定한 申請 및 그 申請과 關聯되는 節次以外的 節次를 踏을 수 없다.

⑧ 第29條의 5 및 特許法 第157條의 21 第8項

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依하여 實用新案登錄 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 則

이 法律은 1970年 6月 19日 워싱턴에서 調印된 特許協力條約이 大韓民國에 對하여 效力을 發生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第 2項 및 第25條의 2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9月の 메모

◁本會主要實行業務▷

- | | | |
|---|--|---|
| 1日 ◇實用新案年報 第564號 發刊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第 1 日次) | 14日 ◇第373回 이週의 優秀發明
「電動式 칼날갈기」選定 報
道依賴
◇工業所有權相談 實施 | ◇工業所有權登錄(7月分)發刊
21日 ◇特許公報 第728號 發刊
◇工業所有權相談 實施 |
| 2日 ◇特許公報 第721號 發刊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第 2 日次) | 15日 ◇特許公報 第726號 發刊
◇會員企業特許管理視察(第1
日次)(金星社) | 22日 ◇第374回 이週의 優秀發明
「VTR의 체인지기어 驅動
裝置」選定 報道依賴
◇實用新案公報 第567號 發刊 |
| 3日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第 3 日次) | 16日 ◇會員企業特許管理視察(第2
日次: 國際商事, 럭키, 現
代自動車) | 24日 ◇發特協資料 第278號 發刊
25日 ◇會誌「發明特許」9月號 發刊 |
| 4日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第 4 日次) | 17日 ◇特許公報 第727號 發刊
◇會員企業特許管理視察(第3
日次: 釜山파이프, 浦項綜
合製鐵) | 27日 ◇特許公報 第729號 發刊
28日 ◇工業所有權登錄目錄(8月分)
發刊
◇商標公報 第217號 發刊 |
| 5日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第 5 日次) | ◇優秀特許管理事例發表(浦項
綜合製鐵)
◇特許管理세미나 開催
◇發特協資料 第277號 發刊 | ◇第11回 제네바國際發明新技
術展 出品審査會議 開催
◇第375回 이週의 優秀發明
「스트로브를 鏡용한 野外用머
어너」選定 報道依賴 |
| 6日 ◇特許公報 第722號 發刊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第 6 日次) | ◇發特協資料 第277號 發刊 | 30日 ◇特許公報 第730號 發刊
◇海外特許情報 第70輯 發刊 |
| 7日 ◇工業所有權相談 實施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第 7 日次) | 18日 ◇實用新案公報 第566號 發刊
◇會員企業特許管理視察(第4
日次: 自由見學) | |
| 8日 ◇特許公報 第723號 發刊 | 20日 ◇商標公報 第216號 發刊 | |
| 9日 ◇實用新案公報 第565號 發刊 | | |
| 11日 ◇特許公報 第724號 發刊 | | |
| 13日 ◇特許公報 第725號 發刊 | | |